

대학 홈페이지 게시용 병무자료

목 차

1. 징병검사	2
2. 재학생 입영연기	4
3. 재학생 입영원(신청)	4
4. 재학생 입영원(신청) 취소 및 변경	5
5. 현역병 입영	6
6. 상근예비역 입영	7
7. 각 군 지원입영	8
8. 사회복무제도	9
9. 입영(소집)기일 연기	10
10. 동원훈련/예비군	10

대학 홈페이지 게시용 병무자료

◆ 병역의무 이행과정 전반

- 제 1국민역 편입
▼
- 징병검사
▼
- 징소집 복무
▼
- 예비역 복무

18세	19세	20~30세	31~40세	45세
병역의무 발생				전시 등 병역의무 기간연장 (45세)
	병역처분			
	19~30세까지 징소집 입영			
	예비군 편성, 병력동원(훈련) 소집			

◆ 병역의무 이행과정

1. 징병검사

- 징병검사 대상자 : 금년 만19세가 되는 사람 전원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
- 징병검사 과정

검사종류	검 사 내 용
등록	본인여부확인 및 신분인식카드 교부
인성검사	정신질환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
임상병리검사	감염/ 간기능 검사, 소변검사 등
방사선검사	X-ray, CT, MRI 검사
신체검사	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, 신체등위 판정
적성분류	자격, 면허, 전공학과, 직업,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분류
병역처분	1급 ~ 7급까지 신체등위 기준에 따른 병역처분

○ 병역처분 기준

구 분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
대 학	현역			보충역	제2국민역	병역면제	재검사대상

○ 징병검사 본인선택

- 선택대상 : 당해연도 징병검사 대상자
- 선택방법
 -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(지)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
 - 다만, 학생(대학생, 고교생), 학원수강생,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(학교소재지, 수강학원소재지, 직장소재지) 관할 지방병무(지)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선택
 -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→ 전자민원창구 → 징병검사 민원신청 → 징병검사본인선택
- 선택기간 :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 선택

○ 징병검사 통지서

징병검사통지서는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, 징병검사 본인선택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.

○ 징병검사 기일연기

- 기일연기 대상 :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
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
 고등학교이상 재학자로 시험, 공식대회 참가자
- 연기절차 : 징병검사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기일연기원 제출

2. 재학생 입영연기

○ 입영연기 대상

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휴학자 포함)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사람.

○ 학교별 제한연령

고등학교	전문대학		대학				대학원			연수기관
	2년제	3년제	4년제	5년제	6년제	의과	2년제	2년제 초과과정	의과	
28세	22세	23세	24세	25세	26세	27세	26세	27세	28세	26세

○ 입영연기 제한

-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
-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
- 도망, 잠입한 사람,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,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.

3. 재학생 입영원(신청)

○ 목적

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

○ 신청대상

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전문대학, 대학 및 대학원(휴학중인 사람 포함)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

○ 신청시기

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,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

○ 구비서류

재학생입영신청서(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)

○ 신청방법

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→현역/공익입영신청→재학생입영신청
에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및 팩스 신청

○ 유의사항

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 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합업 공백을 줄일 수 있다.

4. 재학생 입영원(신청) 취소 및 변경

○ 내용

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를,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 시의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○ 신청시기

- 재학생입영취소신청서 : 입영전일까지
-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 : 입영통지 전까지

○ 구비서류

재학생입영취소신청서 또는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
(병무청 홈페이지 출력가능)

○ 유의사항

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내에 취소한 사람은 2개월이 경과 후 다시 재학생 입영원 신청 가능하며,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여 처리하며 다음 사항이 제한된다.

- 입영통지 중인 사람은 입영희망시기 변경 제한
-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 취소 제한

5. 현역병 입영

○ 현역병 입영시기 및 부대결정

현역병 입영시기 및 부대결정은 군소요 적성별 총원계획에 따라 본인이 징병검사 시 희망한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 일자 별 소요에 따라 컴퓨터로 자동결정

○ 현역병 복무기간

군별	현행	단축 후	단축방법
육군병 해병병	24개월	18개월	○ '06.1.3 ~ '11.1. 1일 입영자 → 3주단위 1일씩 ○ '11.1.2~ '14.7.26일 입영자 → 2주단위 1일씩
해군	26개월	20개월	○ '05.11.3 ~ '11.1. 2일 입영자 →3주단위 1일씩 ○ '11.1.3~ '14.6.15일 입영자→ 2주단위 1일씩
공군	27개월	21월	○ '05.10.3~ '10.12.24 일 입영자→3주단위 1일씩 ○ '10.12.25~ '14.5.18일 입영자→ 2주단위 1일씩

○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 본인선택

재학생입영연기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/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

- 신청대상 : 대학(원)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, 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인 사람
- 신청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→전자민원창구→현역/공익입영신청
→현역병 입영일자/부대본인선택

6. 상근예비역 입영

○ 의의

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집에서 출,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

○ 대상 :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

○ 복무기간 : 통산 24개월

※ 육군 5주, 해군 4주, 해병 7주 기초군사교육훈련 포함

※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준함.

○ 복무형태 : 기초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

○ 복무분야

-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
- 예비군중대 행정병,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

○ 선발방법

지방병무청장이 거주지별로 선발하되 학력, 신체등위,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의해 전산 선발

○ 선발취소

상근예비역 선발대상자 중 신상변동 등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집대상 선발 취소

- 대학생 입영연기자
-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

7. 각 군 지원입영

○ 동반입대

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신병교육은 물론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 까지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

- 지원자격

- 연령 : 18세~28세
- 신체등위 : 1급~ 2급 현역입영대상자
- 학력 : 중학교 졸업이상

- 복무

- 입영부대 : 102보충대, 306보충대
- 복무부대 : 상비사단.군, 군단 직할 : 중,소대단위
향토/동원사단 : 중,대대단위
- 유의사항 : 동반 입대할 2명이 동시지원서 작성
기소유에 이상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 제한

○ 유급지원병

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일정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군 복무하는 제도

- 지원자격

- 연령 :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
- 신체요건 : 신체등위 1급 ~ 3급의 현역입영대상자
- 학력 : 중졸이상의 학력취득자
- 자격 : 해당 특기 자격, 면허 소유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

- 복무기간 : 입대 시부터 3년간

- 의무복무기간 : 일반경과 동일(이병~병장)
- 연장복무기간 : 하사(부사관 대우)

- 보수 : 연장복무기간 중 월 120만원 수준, 장려수당 별도 지급

- 인센티브 : 장교,부사관, 군무원 진출 본인 희망 시 우대 등

○ 카투사

- 지원자격

- 연령: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~28세 이하
- 학력 :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
- 신체요건 : 신체등위 1~3급의 현역입영대상자
- 어학성적

구분	TOEIC	TEPS	TOEFL			G-TELP Level2	FLEX
			PBT	CBT	IBT		
성적	780	690	561	220	83	73	690

8. 사회복무제도

○ 사회복무제도 개념

병역체계를 2분화 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(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는 사회복무제도로 편입)

○ 대상자(사회봉사요원)

- 보충역(4급) 대상자(※ 현행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,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, 2011년까지 폐지)
- 산업기능요원(보충역), 5급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

○ 복무기간 : 26개월→22개월 단축(2014년 이후)

- 2005. 11. 3일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점진적 단축
- 2014년 6월 18일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22개월 단축

○ 사회봉사요원 교육

- 소양교육 : 1주일 (※봉사정신 및 윤리의식, 책임감 강화)
- 직무교육 : 병무청 통합 운영교육 : 1~2주
 보건복지분야 교육 : 2주
 (직무지식 및 현장실습)

9. 입영(소집)기일 연기

○ 개념

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(소집) 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(소집)기일을 연기하는 제도

○ 신청대상

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.

○ 신청시기 :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 가능

○ 신청방법 : 지방병무청 민원시 방문 및 우편 접수

○ 입영기일 연기사유

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

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
- 본인의 직계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
-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. 다만,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한다

10. 동원훈련/예비군

○ 병력동원 소집

병력동원 소집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

- 예비군 편성 대상자

- 예비역의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: 현역 연령정년까지

- 예비역의 병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: 전역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 - 지원자(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)
- 예비군 편성 기간

○ 병력동원 훈련소집

전시, 사변 등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전시 임무 숙지 및 훈련

- 훈련소집 대상

- 장교 및 부사관 : 전역후 1~6년차
- 일반하사 및 병 : 전역 후 1~4년차

- 훈련 기간

- 지정자 : 연 1회 2박 3일간 실시
- 미지정자 : 장교(2박 3일 동원미참자 교육)

부사관,병(24시간 미참자 훈련, 12시간 향방작계훈련)

※ 대학생의 경우 연간 8시간 예비군 훈련 실시